

## S 맨션 화재



# 부부싸움 끝에 집 주인이 분신자살 기도

-아파트 화재임에도 피해가 25세대에 미쳐

사망 1명, 부상 1명, 재산피해 3천7백만원

##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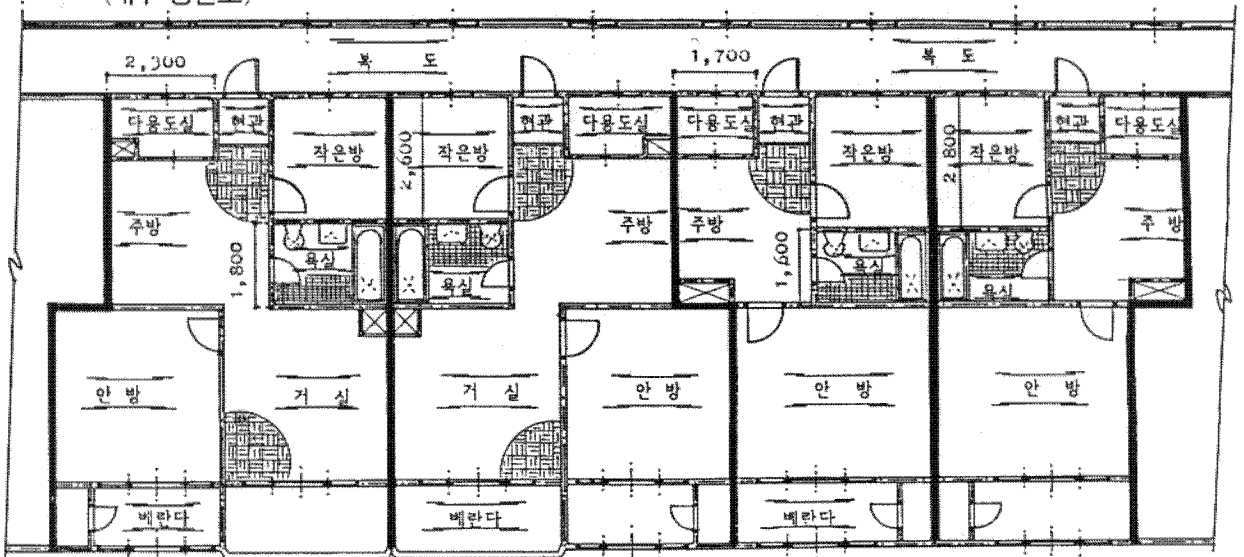
- 건물명 : S맨션
- 소재지 : 부산직할시 남구 소재
- 발화위치 : 8동 711호
- 화재일시 : 1988년 7월 14일 18시 48분(목요일)
- 화재원인 : 방화(분신자살 기도)

## 2. 건물개요

이 아파트는 1978년에 신축된 총 8개동의 12층건물로 79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난방은 이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공급을 받고 있으며 각 세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8동은 편복도식 아파트로 연면적 12,130㎡에 168세대(16평형 72세대, 21평형 72세대, 30평형 24세대) 약 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내부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내부 평면도〉





### 3. 화재상황

8동 711호에 세들어 살던 주인 남자(43세)가 심한 부부싸움 끝에 식유를 불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다가 가재도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갑자기 경보벨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7층 711호에서 연기가 나와 주민들은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였으며 발생한 화재는 711호와 811호를 전소시키고 8동 정문수위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 4. 연소확대 및 진화

불은 가연성 가재도구를 태우면서 급속히 확대되어 711호를 태우고 윗 층으로 연소되었다.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배란다 창문을 통해서 불길어 811호로 확대되어 갔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711호와 811호가 연소되고 있는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차는 아파트 8동에 정차하여 내부 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 소화작업을 하는 한편, 인명구조 특공대를 투입하여 711호에서 2명을 구출, 후송하고 8층에서 8명, 9층에서 11명을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유도하였다. 복도식 아파트로서 피난이나 소화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출동한 소방차는 총 18대로 펌프차 9대, 급수차 8대, 고가차 1대였으며 소방관 71명, 경찰 15명등 96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 5. 피해상황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711호 세대주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7월 23일 22시경에 사망하였고 부인은 경화상을 입었다.



〈발화세대의 내부벽체 도괴상태〉  
내부벽체는 시멘트 블럭이었다.



〈711호 내부 소실 모습〉  
벽체와 천장이 새까맣게 변해있다.

이번 화재로 711호와 811호의 내부 벽체 및 내장을 전소시켰고 이웃 세대인 710, 712호, 810, 812호는 복도를 통해 들어간 연기 및 소방수에 의해서 장판지, 벽지, 천정지등이 오손되었다. 또한 9층~12층의 11, 12호 라인은 연기에 의해서, 발화세대 하부층인 2층~6층의 11호 라인은 수침에 의해서 내부 벽지등이 오손되었고 옥탑에 있는 물탱크의 물을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물로 인하여 승강기가 전반적으로 교체 및 수리를 요하는 상태이다.

화재진압후 건물 및 부대설비에 대한 손해사정을 실시한 결과, 711호와 811호의 각 7백 9십 만원을 포함하여 25세대에 걸쳐 2천 5 백만원의 손해를 당했으며 승강기등 부대설비에 대한 피해액은 1천 2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화세대의 복도〉

이 복도를 통하여 이웃세대에 연기 및 수손피해입혔다.

## 6. 원인 및 문제점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경계벽과 방화벽으로 세대별 구획이 되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해도 그 피해가 1세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야기된 화재로 판명되었지만 발화세대와 그 직상층 세대를 전소시켰을 뿐만아니라 피해범위가 25세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그 원인 및 문제점은 다음의 몇가지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가.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는 배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통상적으로 배란다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서 가연성 비품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 창문을 통한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직상층 세대를 전소시키고 상층부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었다. 또한 편복도식 아파트로서 복도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연기가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

나. 발화층 아래 세대의 피해는 소화작업시 유입된 물로 인한 것이었다. 소방대의 진화작업시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물을 쏟아 놓는다. 이 물은 배수구, 피트등을 통해서 아래 층으로 흘러 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벽체, 천정등에 물이 스며들어 실내를 오손시킨다.

또한 이 아파트는 내부 벽체가 시멘트 블록으로 흡수한 물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6층의 10, 11, 12호 내부벽지, 천정지, 장판지등이 손상되었으며 211, 311, 411호도 수손피해를 당했다.

다. 고층 아파트로서 소화작업이 지연되었다. 출동한 소방대는 계단을 통하여 옥내 진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진화작업이 늦어졌다.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였으나 74년도에 구입한 노후 장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8m 이상의 공지거리가 있어야 하고 지반이 견고하여야 한다. 당 아파트는 부지입구가 2.4m로 매우 협소하였고 50cm 정도의 콘크리트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또 주변은 잔디가 심어져 지반이 몹시 취약하고 부지의 폭은 5m에 불과하여 고가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311호의 내부 수손상태〉

화재는 7층에서 발생하였으나 소화작업시 사용된 물에 의하여 그 피해가 3층까지 미치고 있다.